

#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정관

제정 2014년 5월 12일

개정 2015년 4월 14일

개정 2018년 3월 7일

## 제 1 장 총 칙

제1조(이름과 지위) 본회는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이하 '본회'라 하고 영문으로는 'Slow Food Korea'라 한다) 라 하고, 슬로푸드국제협회 (이하 '국제협회'라 하고 영문으로는 'Slow Food International'이라 한다) 의 소속으로 한국의 슬로푸드운동을 대표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국제협회가 정한 정관 및 각종 규약과 슬로푸드 선언문의 철학에 따라 누구나 좋고 깨끗하며 공정한 음식을 누릴 수 있도록 활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과 사업) 본회는 국제협회의 정책을 준수하며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한다.

1. 생산자와 공동생산자를 연결하는 행사 개최와 연대 활동
2.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활동
3. 슬로푸드 미각교육 및 컨설팅사업
4. 한국에서 지부의 육성과 국제슬로푸드 네트워크와의 소통
5. 국제슬로푸드 네트워크의 발전, 특히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슬로푸드 지부들과 교류와 협력
6.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홍보출판, 조사연구, 정책개발

제4조(구성) 본회는 회원과 지부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제5조(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5 동신빌딩 3층 303호에 두고, 필요에 따라 광역시도에 연합회, 시군구에 지부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협력회원으로 구분한다.

- ①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 개인으로 한다.
- ② 후원회원은 정기적으로 재정적 기여를 하는 기관(단체, 업체) 및 개인으로 한다.
- ③ 협력회원은 본회가 인정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와 개인으로 한다.
- ④ 가입과 탈퇴 및 회원자격 등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본회와 지부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국제협회 회원 규정, 본 정관 및 제 규정을 따르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자격의 제한과 상실)**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면이나 구두로 회원 탈퇴를 신청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2. 본인이 사망하거나 회원인 단체가 소멸했을 때.
3. 제명되었을 때.

③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경고,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본회의 정관, 기타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2.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회에 재산상, 신용상 손해를 끼쳤을 때
3. 본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을 때
4. 기타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

④ 제명은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하며, 제명 외의 징계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징계대상자에게는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징계 절차, 징계 심사 등 회원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 3 장 지 부

**제9조(지부에 대한 지원)** 본회는 전국 곳곳에 슬로푸드 운동의 기초 단위가 되는 지부(Convivium)를 육성하고 각종 규정에 따라 활동하도록 지원한다.

**제10조(지부의 설립과 폐쇄)** ① 지부 설립은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다섯 명 이상의 정회원이 모여 지역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설립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는 희망하는 지부의 이름과 지부가 위치하고 있는 주소지, 대표와 부대표 이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③ 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총회의 의결로 지부를 폐쇄할 수 있다.

1. 국제협회의 로고 사용 규정을 따르지 않았을 때
2.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했을 때
3. 일정기간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④ 지부는 자체 정관에 준하는 규정에 의하여 조직과 운영의 독립성을 갖는다.

⑤ 지부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지부의 임무) 지부는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슬로푸드의 철학 장려
2. 슬로푸드의 철학을 공유하는 음식공동체의 육성
3. 회원 모집
4. 지속가능한 음식시스템의 발전과 먹을거리의 생산에 대한 관심 촉구
5. 요리사,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미디어와의 관계 등 연대 구축
6.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농업, 지역의 전통 요리법과 식문화의 계승 및 발전, 생물다양성 보호
7. 다른 지부와의 협조적이고 친목적인 관계 유지
8. 본회와 국제협회의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홍보

제12조(지역연합회의 설립) 3개 이상의 지부가 활동을 하는 권역에 지역연합회를 설립하여 정보 교류와 자원 공유, 연합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 4 장 회 의

제13조(총회 구성과 기능)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③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1. 임원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4. 주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본회의 해산 또는 휴업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에서 상정한 사항

제14조(총회 소집) ① 정기총회는 연1회로 한다.

- ②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시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 ④ 회장은 총회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정기총회는 15일 전까지, 임시총회는 7일 전까지 우편 또는 전자문서를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총회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회의소집이 불가능한 때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연명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전항에 따른 총회에 있어서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16조(총회 의사)** 총회는 정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

**제18조(대의원회)** ① 본회는 총회의 기능을 갈음할 기관으로서,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제13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총회 의결에 갈음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 해산은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③ 본회의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는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④ 대의원의 총수는 50인 이상 200인까지로 한다.

⑤ 대의원의 선출방법 및 대의원 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⑥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대의원회 소집)** ①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년1회, 임시회는 수시로 개최한다.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한 경우 제14조 제1항의 정기총회를 소집한 것으로 본다.

②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0조(대의원회 의사)**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대의원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대의원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회의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연명으로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전항에 따른 대의원회에 있어서는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대의원회 의결사항의 총회보고)** 대의원회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다음 총회에 부의하여 추인을 받는다.

제23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본회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기구이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로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감사의 소집 청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사는 자신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에 관한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⑦ 이사회는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가 위임한 사항
2. 총회의 의결사항에 속하지 않는 활동 및 운영과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등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4.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회원 및 사무총장·사무국원에 대한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부의한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지부, 지역연합회의 설립 및 변경,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5조 (이사회 의결의 등) ① 이사장은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② 외국출장 등으로 이사회 참석이 어려울 경우 해당 이사는 출석이사 전원이 발언을 동시에 청취할 수 있는 전화 및 화상장비, 기타 유사한 통신 장비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한다.

③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운영위원회) 본회는 일상적 운영과 집행을 위한 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부회장, 상임이사, 사무총장, 이사 중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약간 명으로 총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7조(의사록) ① 총회와 대의원회, 이사회의 의사에 관여하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 5 장 임 원

제28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하
3. 상임이사 1인
4. 이사 50인 이하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5. 감사 2인 이하

제2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와 한국 슬로푸드를 대표하여 국내외적인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대의원회, 이사회 의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연장자 순서에 따라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기타 회장이 위임한 역할을 수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를 집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황, 회계 등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장에게 이사회 또는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 요청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일

제30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과 부회장, 이사, 감사는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③ 감사는 이사 또는 본회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④ 대의원회에서 임원 선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궐위된 때에는 정회원 중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이사를 이사회 의결에 따라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③ 회장이 새로 임명한 이사는 임명 후 직무를 수행하며, 임명 후 처음 개최되는 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못할 경우 해임된다.

④ 보궐 임원의 임기는 각각의 전임자 또는 현임자의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⑤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6.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3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들에게 의결하기 전에 반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심신의 장애 때문에 직무 수행에 견딜 수 없다고 인정 될 때.
2.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제34조(고문) 본회의 사업목적 및 관련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분을 이사회에서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5조(자문위원 및 전문위원) ① 본회는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은 상임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고, 자문위원은 본회의 업무전반, 전문위원은 해당업무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 6 장 집 행 기 구

제36조(사무국) 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무처리 하는 등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이사회 산하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실무책임은 사무총장으로 하며,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직원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국제협회 및 아시아 오세아니아 네트워크, 해외지부와 교류, 협력하는 국제협력부서를 둔다.

⑤ 사무국의 직제와 직원의 임면, 정수, 근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활동기구) ① 본회의 목적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사회 산하에

활동기구를 둘 수 있다.

② 활동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활동기구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활동기구에서 정할 수 있다.

제38조(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산하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본회의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연구
2.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한 의견의 제시
3.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한 활동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 제 7 장 재 정

제3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0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회비, 사업수입, 후원금 및 기부금으로 마련하며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회원회비의 일부는 슬로푸드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국제협회와 지부에 지원한다.

제41조(기부금) 제31조에 따른 기부금은 본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공개한다.

제42조(자산관리) 본회의 모든 자산은 법인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고 회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43조(보고의무) 회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수지결산서, 사업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8 장 보 칙

제44조(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 참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해산) 본회는 다음 각 호의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산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시
2. 파산
3. 주무관청이 관련법규에 따라 법인 허가를 취소했을 경우



제46조(청산) ① 총회의 해산 의결이 있을 경우, 이사회는 즉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 부 칙

제1조(준용) 이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및 「민법」 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강행규정에 반하는 사항은 「민법」 및 동 규칙을 적용한다.

제2조(시행) 이 정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경과조치)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사단법인 허가를 받아 관할 법원에 등기를 필한 이후부터는 현재의 슬로푸드문화원의 업무일체가 사단법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로 귀속된다.